

[청구인] ○○○

[피청구인] ○○보건소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8. 청구인에게 한 「의료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 ○○(○○동)에서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다 2016. 5. 13. 민원신고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4.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56조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6. 5. 31. 청구인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2016. 6. 8.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15,7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병원의 홍보팀장이 의료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 의료광고를 모방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병원 관련자 모두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절대 고의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수술 및 수술결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단순하게 ‘전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사칭하거나 환자를 현혹하기 위한 홍보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④ 피청구인이 평소 의료광고 관련 규정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수지접합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수년간 관절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전문병원의 지정과 명칭사용 제한에 대하여 몰랐다고 볼 수 없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문병원’을 모방하여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병원이 ○구지역의 척추병원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조, 제3조의5, 제42조, 제56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6. 5. 13. 민원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16. 5. 24. 이 사건 병원에 출장하여 해당병원 홈페이지에 ‘류마티스/내분비 클리닉 전문’, ‘척

추 전문병원’, ‘수지접합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서를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6. 5. 24.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56조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5. 31. 청구인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6. 8.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15,75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의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6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목23)에 「의료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제반규정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들 중 진료과목의 수,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해당질환 환자의 구성비율이나 진료의 난이도 등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병원에 한하여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명의자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지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여 위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광고’가 아닌 ‘과장광고’로 보아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